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

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

Ⅰ. 제도의 의의

1. 개 념

○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·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,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 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(Rolling Plan)

2. 제도운영의 필요성

- 중·장기적 시계에서 구의 비전과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발전계획을 수립, 구 재정운용의 기본자료로 활용
- 단년도 예산편성 제도의 미비점 보완과 재원배분의 효율성 증진
-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중·장기 중점재원 투자방향, 주요사업계획을 반영하고 국가와 우리구의 재정적 연계성 확보

3. 연혁 및 근거규정

- ('88년) :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법제화
- ('93년) :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동화계획으로 운영
- ('95년) : 계획수립 결과를 관계 부처에 통보, 협의 추진
- ('05년) : 계획수립 시기 조정(4월 →11월)
- ('07년) : 사업예산제도와 연계하여 수립
- ('15년) : 계획수립 연도 변경(다음 회계연도로부터 5개년간)

관 련 근 거

- ◆ 지방재정법 제33조(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)
 -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
 -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한 자문
- ◆ 지방재정법 제44조의 2(예산안 첨부서류)
 -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의 첨부서류

Ⅱ. 계획수립 및 운영체계

□ 계획기간: 2019 ~ 2023년 (5개년)

2019년		2020년		2021년	2022년	2023년
최종예산안 (전망치)	•	발전계획	•	발전계획	발전계획	발전계획

□ 계획대상

○ 대 상 : 일반회계, 기타특별회계, 기금

○ 기 준: '19년도 최종예산안(잠정계상)을 기준으로 하되,

'20년 이후는 성장률·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를 적용

□ 주요내용

- (재정목표) 지역발전 및 재정운용의 목표·전략 등 기본방향
- (재정전망) 세입·세출 추계 및 투자가용재원 전망
- (투자계획)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제시

□ 계획방향

- 「행정안전부 2019~202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기준」('18.8)에 따라 계획 작성
- 국가 경제성장 추이와 전망, 재정여건 변동 등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변수를 종합적으로 분석·반영
- 지방재정 운용의 투명성 ·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사업예산제도와 연계하여 수립
- 「2018~2022년 중기지방재정계획」('17.11) 수립 이후 여건변화 요인을 점검하고, 이에 따른 보완사항을 반영하여 수립

□ 수립 절차

1	행정안전부	■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기준 작성, 자치단체 통보
2	지방자치단체	■ 지방자치단체별 사업계획(안) 수립
3	지방자치단체	■ 자치단체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신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
4	지방자치단체	■ 관계부처 의견을 반영, 중기지방재정계획 확정 ■ 지방의회 및 행정안전부에 제출
⑤	행정안전부	■ 전국 중기지방재정계획 종합, 관계부처 협의
6	행정안전부	■ 국무회의 보고, 중앙부처·자치단체 송부

- 지방자치단체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·확정하여, 지방의회에 예산안 첨부서류로 제출 및 행정안전부에 제출
- **행정안전부**는 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종합하여 관계부처 협의 후 국무회의 보고